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9. 18.

발의자 : 권칠승 · 박정 · 박홍근

김해영 · 이수혁 · 이춘석

박재호 · 정재호 · 고용진

백재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·중견기업이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아야 하지만, 국내은행은 부동산 등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동산과 신용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특허권 등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에게 금융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임.

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, 은행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요시하여,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담보대출이 고도로 발달하였으며, 중국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등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은행 손실의 보전, 대출금리 일부 보조, 담보로 사용된 산업재산권 매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.

우리나라도 혁신형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

성화를 위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은행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).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촉진)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) 및 중견기업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)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(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)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(이하 “담보 산업재산권”이라 한다)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(이하 “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·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3(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)
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에 출연할 수 있다.

1.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

2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2. 정부의 출연금

3.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

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담보로 제공된 산업재산권 매입

2.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·처분, 매각 및 라이선싱 등 활용

3.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32조의2(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촉진)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 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) 및 중견기업(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)의 채무 불 이행으로 금융회사등(「금융회 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 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)이 보 유하게 된 산업재산권(이하 “담보 산업재산권”이라 한다)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(이하 “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 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 산권을 매입하는 방식·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</p>

<신 설>

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3(담보 산업재산권 매입

· 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)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에 출연할 수 있다.

1.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

2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2. 정부의 출연금

3.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

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업을 효율적으

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담보로 제공된 산업재산권

매입

2.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·처분, 매각 및 라이선싱 등 활용

3.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